

## 예인선 용역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이 입·출항 시 행하는 예선 사용 임차료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수요기관” 이라 함은 예인선을 사용하는 서해어업관리단(이하 “관리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라 함은 예인선 운항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를 말한다.

**제3조(입·출항장소)** 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의 모항인 목포 어업지도선 전용부두를 말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사용시기)** ① 예인선 사용 계약기간은 계약하는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종료일 이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

② 예인선 사용시기는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전일까지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사용료는 계약단가에 의한다.

② 예인선 사용료는 사용횟수(사용시간)로 지급한다.

③ 예인선 사용시간은 기본적으로 예인선이 정계지를 출발한 시간부터 작업이 완료 되어 정계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국가어업지도선 출항 시에는 1시간, 입항 시 최초선박은 1시간 30분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어업지도선 2척 이상이 연속하여 입항 또는 출항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어업지도선 1척 초과 예선의 사용시간은 최소시간 1시간 기준으로 정한다.

④ 당시의 작업조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요기관이 계약된 예인선(1,000마력 이상 3,500마력 미만) 보다 큰 마력급 예인선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선 사용 효율표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할증금액은 단가의 30퍼센트를 적용하고 할증시간은 1월부터 3월까지는 18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4월부터 6월까지는 19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7월부터 9월까지는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는 17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로 한다.

⑥ 단가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 지급한다.  
⑦ 예인선 사용료에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예인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6조(계약업체 자격)** 계약업체는 관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예선업으로 등록 되어 있는 자로서 관리단 어업지도선을 기상 악화시에도 예인 할 수 있는 예인선(1,000마력 이상 3,500마력 미만)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제7조(안전관리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어업지도선 예인에 책임을 지는 주체자로서 예인 중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항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피예인선인 어업지도선 선장은 계약상대자측의 안전운항 협조 요구에 최선을 다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변경 및 해약)** ①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통보를 받고도 고의 또는 부주의로 3시간 이내에 목포 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도착 못할 경우가 계약 기간 내 2회 이상 발생 시

3. 계약대상자의 예인선이 소형으로 수요기관측 어업지도선을 예인 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전항 이 외에 수요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자격 또는 소유권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에도 즉시 수요기관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과 계약대상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계약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보험)** 계약상대자는 어업지도선 예인에 동원된 예인선 운항에 필요한 보험이 가입된 선박이어야 하며, 무보험 선박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선박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 한다.

**제10조(어구의 해석)** 계약에 있어서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